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1. . . (제 회)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
제출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추진에 따라 하위법령에 해당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기록물 보존매체 요건의 일관성 확보(안 제25조제1항)

- 최근 기록물을 수록하는 전자매체로는 내용의 수정·삭제가 가능한 스토리지가 사용되고, 보다 발전된 위·변조 방지 기술이 적용되고 있어 과거 매체에 적용되던 수정·삭제 제한 원칙 삭제

나. 기록물의 부기·정정 절차 및 서식 마련(안 제33조의3)

- 부기·정정 요청서 서식을 마련하고, 기록물관리기관이 부기·정정한 결과를 공공기관에 통보하도록 함

다.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 합격자 공고 방법 변경(안 제42조의2)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 합격자 발표 시 합격자 명단이 아닌 합격자로 결정되었다는 내용을 공고토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2) 입법예고(2021. 12. 24. ~ 2022. 2. 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 제목“(전자매체 수록)”을“(전자매체 수록 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한다.

제3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3(기록물의 부기·정정 요청 및 결과통보) ① 영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기록물의 부기 또는 정정을 요청하려는 공공기관의 장은 별지 제8호의2서식 기록물 부기·정정 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록물을 보존하고 있는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의 부기 또는 정정을 완료한 후에는 요청한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42조의2제7항 중 “합격자 명단을”을 “이름”로,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한다.

별표 제8호의2서식을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5조(전자매체 수록) ① 기록물관리기관이 영 제39조 및 영 제49조에 따라 기록물을 전자매체에 수록하여 보존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한 번 입력후 삭제·수정 또는 재수록이 불가 능한 형태의 보존매체를 사용합 을 원칙으로 한다.	제25조(전자매체 수록 절차) ① (삭제)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3조의3(기록물 부기·정정 요청 및 결과통보) ①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기 록물의 부기 또는 정정을 요청 하려는 공공기관의 장은 별지 제8호의2서식의 기록물 부기· 정정 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록물을 보존하고 있는 기록물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 다. ②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
② ~ ④ (생략) 〈신설〉	

	의 부기 또는 정정을 완료한 후 에는 요청한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42조의2(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의 실시) ① ~ ⑥ (생략)	제42조의2(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의 실시)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합격자를 결 정한 경우에는 합격자 명단을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 에 공고하고 합격자에게 통지하 여야 한다.	⑦ ----- ----- 이를 ----- ----- -----통지해 야---.
⑧ (생략)	⑧ (현행과 같음)

기록물 부기·정정 요청서

요청 기관	기관명	소재지
	기관장 성명	담당부서명
	담당부서장명	담당부서장 전화번호
	담당자명	담당자 전화번호
요청 사항	부기·정정 요청 사유 및 근거	
	부기·정정 대상 기록물	
	부기·정정 대상 기록내용	
	(변경전)	
	(변경후)	
부기·정정 처리자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정책기획과	
연 락 처	(042) 481 - 6226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 3에 따라 위와 같이 기록물의 부기·정정을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요청기관명

직인

붙임 서류	기록물 부기정정 처리사유에 해당하는 근거자료가 있는 경우에 첨부합니다.
-------	---

210mm×297mm[백상지 80g/㎡]